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1. 12 선고 2020가단2108 판결
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(한국명: B)

피고C

변론 종결 2020. 10. 15.

판결 선고 2020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83. 1. 31. 접수 제40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윤경

별지